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6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3월 30일, 이정훈 의원 등 11명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건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을 조정하고,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함

도시환경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일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30일, 이정훈 의원 등 11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정훈 의원)

가. 주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보전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함

나.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역관리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이에 구역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이 될 수 있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복승규)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 조정 및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훼손지역을 복구·관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음
- 반면에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25%, 국비 신청액 대비 43%를 교부받아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건의안에서 제안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가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은 최근 3년간 732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99.9%(2015~2017 기준)의 높은 보전부담금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징수위임수수료율은 징수액의 1% 또는 3% 수준으로 타 부담금 수수료(교통유발부담금: 30%, 폐기물 부담금: 10%, 재활용 부과금: 10%)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임
- 건의안에서 제안한 징수위임수수료가 10%까지 상향될 경우 최근 3년간 징수위임수수료는 89억원에서 297억원으로 증가되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자원 확보를 위해 현재 불합리한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 현재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 조정 및 징수위임수수료율

을 상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9월 19일 임종성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건의안 : 덧붙임

8. 보내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에 전액 귀속 되고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은 중앙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보전부담금 징수 전액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전액 교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297,312백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관리비, 징수위임수수료)를 위한 국비 교부액은 73,277백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평균 25%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2015~2017)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 신청 대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국비 신청액 169,946백만원 중 43%인 73,277백만원이 지원되는 실정으로 현행 불합리한 교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귀속 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귀속비율을 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50%를 귀속하는 법령개정과 함께 현행 1%~3%인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까지 상향하여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한다.

2018년 3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	개정안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은 제26조의1의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26조의2(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은 시·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지방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26조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과 납입·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u>1</u> 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u>3</u> 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u>10</u> 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u>10</u> 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붙임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교부액 현황
-------------	---

(`15~`17,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액	교부액	비율	비고
계	297,312	73,277	25%	
2015	54,068	22,616	42%	
2016	66,070	22,147	34%	
2017	177,174	28,514	16%	

붙임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 신청액 대비 지원현황
-------------	---------------------------------------

(`15~`17,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비 신청액	반영액	비율	비고
계	169,946	73,277	43%	
2015	35,558	22,616	64%	
2016	47,676	22,147	46%	
2017	86,712	28,514	33%	

붙임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보충자료(1)
-------------	--

-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은 94개 중 30개가 징수위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2개 부담금이 10%이상 수수료 지급, 10%이하 수수료 지급 8개 부담금 중 5개 부담금은 징수액의 귀속주체가 광역·기초지자체임
- ※ 국가로 전액 귀속되는 3개 부담금(시설부담금,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담금, GB부담금) 중 시설부담금은 징수실적이 거의 없고,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담금은 부과금이 포함됨. 사실상 GB보전부담금만 지자체 귀속분이 없고 낮은 수수료(3%)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붙임 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보충자료(2)

구분	교부 비율(%)															차등교부 기준
	1	3	4	5	7	8	3-10	10	7-13	20	10-20	10-30	30	50	40-6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														
개발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징수율
교통유발부담금													◎*			징수실적, 관리실적
시설부담금(산업입지)		○														
대기배출부과금									○							징수율
수질개선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수질배출부과금											○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				징수율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												
총량초과부과금(금강)								○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								○								
총량초과부과금(한강)								○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								○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								
총량초과부과금(기타수계)											○					징수율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								
학교용지부담금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농지보전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주 ◎*는 일정비율의 징수액이 지자체로 귀속
자료 : 각 부담금별 관련 법규